



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8. 7. 13.] [강원도조례 제4283호, 2018. 7. 13., 일부개정]

강원도

□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·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토종농작물"이란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를 말한다.
2. "농업"이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 <개정 2016.10.7.>
3. "농업인"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. <개정 2016.10.7.>
4. "토종농작물 보유자"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.
5. "토종마을"이란 마을내의 50%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. <개정 2018.7.13.>

□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
- ① 강원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·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, 수집,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제4조(보존·육성계획 수립)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1.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·육성에 관한 사항

2. 토종농작물의 판매·소비촉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□ **제5조(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·기능)**

- ① 도지사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·추진하고,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 1.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
 2.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·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
 3.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
 4.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원 부장, 농산물원종장장, 시·군 농업기술센터장,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한다.
- ④ 협의회 의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.<개정 2015.1.2>
-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-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
□ **제6조(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)**

- ① 협의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-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□ **제7조(협의회 의안 제출)**

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□ **제8조(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)**

-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·장기 계획
 2.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
 3.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
 4.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농작물 가공·유통·판매 사업 지원 계획
 5. 그 밖에 도민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

□ **제9조(토종농작물 가공·유통·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)**

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·유통·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에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
2. 지역사회 재화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
3.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
4.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

□ **제10조(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 지원)**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·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을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고,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.

□ **제11조(토종농작물재배계획의 제출)**

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, 지원받거나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·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**제12조(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)**

- ① 농업인 등은 제11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,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급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(이하 "직접지불금"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.

□ **제13조(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)**

-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.

□ **제14조(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)**

- ① 제12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·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·군수가 결정한다.
-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□ **제15조(시행규칙)**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제3753호, 2014.5.16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(제3797호), 2015.1.2>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조례의 개정)

(1)~(21) 생략

(22)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4항 중 “농축산식품국장”을“관련 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(23)~(49) 생략

부 칙 <제4071호, 2016.10.7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4283호, 2018.7.13.>
(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